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3. 6. 5.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6월 4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 아동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아동위원의 인원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

#### 나. 주요내용

- 1)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 및 자격기준 명시(안 제3조)
-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 규정(안 제4조)
- 3) 위원의 임무와 협의회 회의사항 규정(안 제5조)
- 4)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 마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각 동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을 동별 1명으로 조정하여 18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무와 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은 관할구역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1994. 12.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기준이나 임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7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1994년 조례 제정이후 아동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임무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명시(안 제1조)
- 나. 위원의 정수를 각 동 1명으로 정하여 18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기준 명시(안 제3조)
- 다. 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 규정 명시(안 제4조)
- 라. 위원의 임무사항 규정하여 협의회 활동기준 마련(안 제5조)
- 마. 활동비 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명칭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7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5.2~ 5.15)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제4조제2항제3호 중)

(원 안)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반영안)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회회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업무 지정
2.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수집
4. 그 밖에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관 건의 등

**제3조(구성)** ①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홍보
3. 불우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및 급식장소 발굴 추천
5. 아동관련 행사 주관
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새로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